

# WTO體制下的 國際環境規制가 韓國貿易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

- Effec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under the WTO  
Regime on Korea's Trade and Its Countermeasure -

李 康 斌\*\*

- I. 序論
- II. GATT體制下的 國際環境保存과 貿易規制
  - 1. 概說
  - 2. 最惠國待遇의 原則
  - 3. 內國民待遇의 原則
  - 4. 輸出入制限禁止
  - 5. 一般的 例外條項
- III. 國際環境協約과 貿易規制
  - 1. 오존層 破壞物質에 관한 몬트리올議定書
  - 2. 有害廢棄物의 國境移動 및 處理에 관한 바젤協約
  - 3.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國際交易에 관한 協約
  - 4. 氣候變化에 관한 유엔基本協約
  - 5. 리우宣言과 議題21
- IV. 先進國의 環境政策과 貿易規制
  - 1. 美國
  - 2. EU
  - 3. 日本
- V. WTO體制下的 國際環境保存과 貿易規制
  - 1. 概說
  - 2. 貿易에 관한 技術障壁協定
  - 3. 衛生 및 檢疫規制措置 適用에 관한 協定
  - 4.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 VI 國際環境規制가 우리나라 貿易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 1. 우리나라 貿易에 미치는 影響
  - 2. 政府와 企業의 對應方案
- VII 結論

\* 이 論文은 産學協同財團의 1995年度 學術研究費 支援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尙志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 經濟學博士

## I. 序 論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출범한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을 통한 關稅引下 및 非關稅障壁의 제거로 인해 국제무역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지구의 天然資源의 고갈과 환경의 오염을 초래하게 되어 국제환경보존과 관련하여 GATT의 자유무역규정의 적용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산업활동의 확대와 인구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오존층 파괴, 大氣의 온난화, 일부 동식물의 멸종위기 등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國際環境協約들이 채택되었다.<sup>1)</sup>

國際環境協約은 지구환경보존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무역규제조치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環境開發會議(UNCED)<sup>2)</sup>에서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에 관한 原則이 천명됨으로써 국제환경보존과 무역규제문제는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美國을 비롯한 주요 先進國들은 고조되고 있는 국내의 환경보존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제경쟁에서 自國産業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自國의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國際環境協約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무역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自國의 환경정책을 貿易相對國에 강요하는 事例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 출범한 世界貿易機構(WTO) 設立協定 前文에서도 환경보존이 국제무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사항임을 천명하였고, 자원의 적정배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貿易環境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1)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會議(UNCHE)에서 채택된 「스톡홀름人間環境宣言」(Stockholm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시초로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 리우유엔環境開發會議에는 126개국의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보존과 개발의 동시달성에 관한 先進國과 開發國간의 공감대를 구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國務總理를 團長으로 7개부처 합동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경제기획원, 지구환경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1993, p 10).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UR)協商에서 環境論者들은 국제무역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貿易論者들은 이에 반대하였으며, 各國代表들도 환경문제로인하여 UR協商의 타결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했으므로 환경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제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무역의 비약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동시에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머지않아 환경과 무역에 관한 多者間 協商인 「그린라운드」(GR:Green Round)<sup>3)</sup>가 필연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여기서 국제환경보존과 무역규제 문제가 폭넓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WTO체제하의 국제환경규제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날로 강화되어가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政府와 企業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산업과 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연구내용은 GATT, 國際環境協約, 先進國의 환경정책, WTO協定등을 중심으로, 첫째 GATT체제하의 국제환경보존과 무역규제, 둘째 國際環境協約과 무역규제, 셋째 先進國의 환경정책과 무역규제, 넷째 WTO체제하의 국제환경보존과 무역규제, 다섯째 국제환경규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관련 事例를 들어 고찰하고, 結論으로 앞으로 전개될 그린라운드(GR)와 무역규제에 대한 전망과 그 대책에 관해 筆者의 見解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GATT體制下的 國際環境保存과 貿易規制

### 1. 概說

GATT는 상품교역을 증진시키고 국제무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기 위한 國際規範이므로 무역규제조치가 수반되는 환경보존은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따라

3) 「그린 라운드」(GR)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91년 10월 美國 Max Baucus 上院議員이 UR이후 차기 GATT의 多者間 協商으로서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춘 그린라운드의 출범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서 GATT는 1971년에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作業班」을 구성하였으나 그동안 활동을 중지해오다가 1991년 11월 GATT理事會의 결정에 따라 ‘多者間 環境協約內 무역규제조치와 GATT原則 및 條項’ 등의 作業議題로 활동을 개시하였고, 1992년 12월 GATT總會에서 기존의 作業議題이외에 ‘무역과 환경정책의 상호지지 확보문제’에 대해 추가 연구토록 하여 1994년 2월에 研究結果報告書를 채택한바 있다.<sup>4)</sup>

GATT前文에는 國際環境協約의 일반적 목표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세계자원의 완전한 사용개발’이 고려되고 있지만, 이것은 환경보존이라는 목표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 동안 환경보존과 관련된 GATT 규정들은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되어 왔으며,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온 GATT 제1조, 제3조, 제11조, 제20조와 그 적용 事例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最惠國待遇의 原則

GATT 제1조는 最惠國待遇(Most-Favored-Nation Treatment)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대외무역관계에 있어서 어느 특정국가의 상품은 그 밖의 다른 국가의 同種商品<sup>5)</sup>과 동일한 대우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과 관련하여 GATT 제1조의 最惠國待遇의 原則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상품과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輸入國이 差等關稅를 부과하는 것이 GATT 제1조에 위반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多數見解는 ‘同種商品’의 개념을 상품의 생산방법이 아니라 상품 그 자체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GATT當事國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공정의 環境親和度에 따라 關稅를 달리 부과하는 것은 GATT 제1조의 最惠國待遇의 原則

4) 대한무역진흥공사, 환경장벽Ⅱ, 1993, p.28.

5) John H.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The Michie Company Law Publishers, 1969, p.258. GATT규정에는 여러곳에서 ‘同種商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며, GATT적용상 동일, 유사 또는 유사성질의 상품으로 해석되어 왔다. 同種性的의 판단에 있어서는 제품의 속성, 성질 및 품질, 제품의 투입요소, 최종사용용도, 소비자의 성향 및 구매관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부, 국제환경법과 무역, 1995, p.627).

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이와같은 見解는 또한 Tuna-Dolphin事件<sup>7)</sup>에서 GATT분쟁해결패널(Panel)이 “태평양동부 적도지역에서 참치잡이시에 부수적으로 돌고래가 많이 잡히는 건착망을 사용하여 잡은 참치는 돌고래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잡은 참치와 同種商品이다.”라는 結論을 내림으로써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輸入國은 환경에 害로운 방법으로 생산된 수입상품에 대하여 그것이 GATT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差等關稅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이다.

### 3. 內國民待遇의 原則

GATT 제3조는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輸入國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內國稅 또는 國內規程 등을 적용함에 있어 輸入國內에서 제조된 同種商品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과 관련하여 GATT 제3조 內國民待遇의 原則이 적용된 事例를 보면, 美國이 綜合環境對策補償責任法에 의거하여 EC,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부터 수입된 原油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原油보다 더 많은 內國稅를 부과하자,<sup>8)</sup> EC, 캐나다, 멕시코 등은 명백히 GATT 제3조 內國民待遇의 原則 위반이라 하여 GATT에 提訴하였다.

이 事件에서 美國은 수입된 原油과 국내에서 생산된 原油간의 세금차이가 아주 작

6) 一部學者들의 반대견해는 환경에 해로운 工程을 이용하여 생산된 상품을 環境親和的으로 생산된 상품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GATT 제1조 最惠國待遇의 原則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7) 美國은 「海洋哺乳動物保護法」을 제정하여 태평양동부 적도지역에서 참치조업을 하는 漁夫들로 하여금 참치잡이시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 숫자를 줄이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美國의 기준(1년에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가 20,500마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초과하여 해양포유동물을 부수적으로 잡거나 죽이는 어로방법을 사용하여 잡은 魚類나 그 가공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美國은 「海洋哺乳動物保護法」에 의거하여 1990년 8월 28일 태평양동부 적도지역에서 건착망을 사용하여 잡은 멕시코산 참치와 그 가공물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멕시코는 美國의 참치수입금지조치가 GATT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여 GATT에 提訴하였다(법무부,전개서, p.620).

8) 美國은 輸入原油에 배럴당 11.7센트, 國內産原油에 배럴당 8.2센트의 內國稅를 부과하였다.

기 때문에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세금은 오염방지 조치를 취한 企業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거나 유해폐기물 처리장의 청소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GATT 분쟁해결패널(Panel)은 “수입상품에 부과된 內國稅가 GATT 제3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는 同種의 국내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부과된 세금과 동일한가 아니면 더 많은가에 달려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美國이 綜合環境對策補償責任法에 의거하여 수입된 原油에 부과한 內國稅는 GATT 제3조 內國民待遇의 原則에 위반된 것이라는 結論을 내렸다.<sup>9)</sup>

#### 4. 輸出入制限禁止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Quota), 수입 또는 수출허가제, 기타 다른수단을 이용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 GATT 제11조 수량제한(Quota)금지가 적용된 事例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Tuna-Dolphin事件에서 멕시코는 태평양동부 적도지역에서 잡은 멕시코산 참치에 대한 美國의 수입금지 조치 및 仲介國에 대한 참치수입금지조치는 허용될 수 없는 수량제한이므로 GATT 제11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GATT분쟁해결패널(Panel)은 “GATT當事國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환경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규정이 상품 그 자체에 내재하는 質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한 수량제한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美國의 멕시코산 참치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는 GATT 제11조에 위반된 것이라는 結論을 내렸다.<sup>10)</sup>

#### 5. 一般的 例外條項

GATT 제20조는 GATT當事國이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同條b항)” 및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경우에 한하여 有限天然資源의 보존에 관한 조치(同條g항)”를 각각 취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조치가 동일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

9) 법무부, 전계서, p.640

10) 법무부, 전계서, p.639.

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위장된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GATT當事國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배기기준, 제품의 소음기준,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규제, 독극물 및 유해물질에 관한 규제, 농약잔류한도 등 다양한 환경규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關稅의 부과 등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GATT 제20조 (b)항의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적용된 事例를 보면, 泰國이 담배法<sup>11)</sup>에 의거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1989년 外國產담배(켈런)의 수입을 금지시키자 주요 輸出國인 美國이 GATT에 提訴하였다.

이 事件에서 泰國은 美國에서 제조된 담배에는 낮은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보충하기 위해 화학첨가물이 들어 있어 泰國產 담배보다 人體에 더 해롭고, 특히 국민들이 더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수입을 허용하면 흡연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美國產 담배의 수입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GATT분쟁해결패널(Panel)은 GATT 제20조(b)항의 예외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泰國이 국민건강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GATT에 위반되지 않거나 적게 위반되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泰國이 국민건강상 보호를 위해 外國產 담배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면서 自國產 담배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점 등을 고려해 볼 때 美國產 담배의 수입금지조치는 GATT 제20조 (b)항에 위반된 것이라는 結論을 내렸다. <sup>12)</sup>

GATT 제20조 (g)항의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경우에 한하여 有限天然資源의 보존에 관한 조치”가 적용된 事例를 보면, 캐나다가 1979년에 自國의 200마일 해역내에서 알바코 참치를 조업중이던 美國漁船 19척을 나포하자 美國이 自國의 「漁業保存 및 管理法」<sup>13)</sup>에 의거하여 캐나다로부터 참치

11) 泰國의 1966년 담배法(Tobacco Act)은 當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수입이 금지되며, 담배에는 켈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2) 법무부, 전게서, pp.1016-1025; Daniel C. Esty, Greening the GATT -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pp.267 - 268.

13) 美國 「漁業保存 및 管理法」(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은 魚類의 일정수량이 적절히 보존되도록 보장하며, 고도의 이동성 魚種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國

및 참치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캐나다는 美國의 참치 수입금지조치가 GATT에 위반되며 GATT하에서 캐나다가 누리고 있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GATT에 提訴하였다.

이 事件에서 美國은 참치가 有限天然資源이므로 캐나다에 대한 참치 수입금지조치는 GATT 제20조 (g)항에 의거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GATT분쟁해결패널(Panel)은 美國이 自國내에서 참치제품의 생산이나 소비에 관하여 캐나다에 대한 참치수입금지조치에 상응하는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美國의 조치가 참치자원의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여 취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GATT 제20조 (g)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結論을 내렸다.<sup>14)</sup>

### Ⅲ. 國際環境協約과 貿易規制

#### 1. 오존층 破壞物質에 관한 몬트리올議定書

유엔環境計劃(UNEP) 등 유엔機構가 중심이 되어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國際環境協約이 체결되어 加入國은 물론 非加入國에 대해서도 무역규제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체결되어 있는 약 130여개의 國際環境協約 가운데 18개 協約에 무역규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sup>15)</sup>

몬트리올議定書<sup>16)</sup>는 지구 오존층 파괴로 인한 人體 및 生態系의 피해<sup>17)</sup>를 줄이기

際 漁業協約의 시행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外國의 연안 12마일 밖에서 조업중인 美國漁船들을 나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법무부, 전게서, p. 987).

14) 법무부, 전게서, pp. 985 - 988 ; Daniel C. Esty, op. cit., p. 266.

15)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國際環境協約(1933년 - 1992년)은 동식물 보호분야 10개, 핵 및 대기오염분야 1개, 식물위생규제분야 4개, 동물학대분야 1개, 유해폐기물분야 2개 등 총 18개 協約에 달하고 있다.

16)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ete the Ozone Layer. 몬트리올議定書는 1987년 9월에 채택되어 1989년 1월에 발효된 原議定書, 1992년 8월에 발효된 런던 改正議定書, 1994년 6월에 발효된 코펜하겐改正議定書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5월 27일에 몬트리올 原議定書에 가입하였다.

17) 오존층은 地表에서 25 - 30 Km 상공에 형성되어 자외선의 地表도달 차단기능을 하고 있는데, 오존층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는, ①피부의 면역성 저하로 피부암, 백내장 증가, ②

위해 염화불화탄소(CFC : Chloro Fluro Carbon), 할론(Halon) 등<sup>18)</sup> 95種의 특성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기 위한 協約으로서, 1992년 11월 코펜하겐에서 채택된 改正議定書 제2조에 의하면 CFC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1994년부터 75%감축하고 1996년 부터는 100%감축하며, Halon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1994년 부터 100%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同議定書 제5조에 의거 1인당 연간소비량이 0.3킬로그램 미만인 開發途上國은 제2조에 정한 규제조치의 준수를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몬트리올議定書 제4조는 ①議定書 발효후 1년 이내에 (1992년 1월 1일)非加入國으로부터 규제물질의 수입이 금지되고, ②1993년 1월 1일부터 非加入國으로 규제물질의 수출이 금지되고, ③議定書 발효후 3년 이내에 加入國은 오존층 파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그 목록을 반대하지 아니한 加入國은 1년 이내에 非加入國으로 부터 수입을 금지하며, ④議定書 발효후 5년 이내에 加入國은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제조 되었으나 그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9)</sup>

또한 同議定書 제4조는 加入國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규제물질의 생산 및 이용기술을 非加入國에게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加入國들은 규제물질의 생산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제품, 장치, 공장 또는 기술을 非加入國에게 수출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금, 원조, 신용 또는 보험의 제공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同議定書의 규제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온 非加入國에 대하여는 本條에 규정된 수입과 수출을 허용하는 예외규정<sup>20)</sup>을 두고 있다.

식물 광합성 방해로 콩과 식물의 수확감소, ③플랑크톤 감소로 새우, 멸치 등 해양먹이사슬 붕괴, ④온실효과 증대로 해수면 상승, 홍수 등 기후변화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경제기획원, 전게서, p.56).

18) CFC는 무색, 무취, 비연화성의 투명한 액체 또는 기체로서 냉매(냉장고, 에어컨, 빌딩냉방용), 세척제(반도체, 정밀기계, 카메라렌즈 세척용), 발포제(냉장차, 건축자재, 스폰지 등), 분사제(화장품, 모기약, 농약 등 스프레이 제품)로 사용되며, Halon은 선박, 항공기, 군사용, 대형건물용 소화제로 사용된다 (경제기획원, 전게서, p.56).

19) 美國은 1994년 5월부터 가방, 스티로폴 등 CFC를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label) 부착을 의무화 하고, 경고라벨(label) 미부착제품은 輸入通關을 불허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전게서 p.124).

20) 몬트리올議定書 제4조 제8항은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議定書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대한 본조에 규정된 수입과 본조에 규정된 수출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加入國會議에서 그 국가가 제2조, 제2조의 가 내지 마 및 본조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 2. 有害廢棄物の 國境移動 및 處理에 관한 바젤協約

바젤協約<sup>21)</sup>은 先進國들이 自國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유해폐기물을 中南美, 아프리카 등 後進國에 밀수출 매각하여 환경오염이 국제 문제화됨에 따라<sup>22)</sup> 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젤協約은 수은, 카드뮴 등 47種의 유해폐기물을 지정하고, 加入國은 非加入國과의 교역을 금지하며, 유해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에는 協約上의 適法節次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바젤協約 제4조 및 제5조는 原則的으로 유해폐기물 輸出國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취급할 적절한 시설이 없거나, 輸入國에서 재활용이나 자원회수산업에 투입될 원자재로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며, 다음의 경우 즉 ①바젤協約의 加入國도 아니고 동일한 환경기준을 설정한 協約의 加入國도 아닌 국가에 대한 수출, ②南極으로의 수출, ③예정된 최종목적지 국가가 이러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그 會員國에게 國內法으로 이러한 수입을 금지하는 地域機構에 가입한 경우, ④예정된 최종목적지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나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바젤協約 제6조 및 제7조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原則的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事前通報承認'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는 輸入國이 유해폐기물을 自國內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輸出國의 當局은 輸入國이나 經由國의 當局에게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고지하여야 하며, 輸入國이나 經由國의 主務當局은 通知者에게 이동을 허락, 거절 또는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는 書面通知를 보내야 하며, 輸出國의 主務當局은 관련된 모든 主務當局

또한 제7조에 정하여진 자료를 그 국가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1)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 and Disposal. 바젤協約은 1989년 3월22일 채택되어 1992년 5월 5일 발효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28일에 가입하였다.

22) 예를들면, 기니의 카사섬에 야적된 '필라델피아 재 事件'을 들수 있는데, 1987년 10월 하이티 商務部가 한 비료회사에 비료 輸入許可書を 발부하였으나 실제 선적되어 온 것은 美國 필라델피아주의 독성 도시폐기물 조각에서 연소된 약 14만톤의 재이었으며, 따라서 하이티政府는 이 재를 國外로 반출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약 3,000톤의 재가 해변에 방치되어 海水에 흘러들어가 카사섬 등 해변을 오염시키는 事件이 발생하였다 ( 법무부, 전게서, p.253 ).

으로 부터 書面同意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때까지는 이동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 3.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sup>23)</sup>은 비밀교역이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의 輸出國과 輸入國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協約 제2조는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거래가 그 種<sup>24)</sup>의 생존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목록에 기재된 야생 동·식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協約은 보호대상 동·식물을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附屬書로 구분하여 수출입을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附屬書 I 은 멸종위기에 처한 種에 관한 것으로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를 금지하며(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등), 附屬書 II는 멸종위기에 처할 위협이 있는 種에 관한 것으로 輸出國 政府의 輸出許可書를 받아 상업목적의 거래가 가능하며(곰, 사향노루 등), 附屬書III은 특정국가의 동·식물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種에 관한 것이다.

이 協約 제10조는 일정한 조건아래 非加入國과의 거래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바, 非加入國과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非加入國의 권한이 있는 當局에서 이 協約上 許可書 또는 證明書의 요건과 실질적으로 일치되도록 발급한 문서는 加入國이 許可書 또는 證明書에 갈음하여 수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이 協約은 1973년 3월 3일에 채택되어 1975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 가입하였다.

24) 種(species)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생물분류의 기초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개체를 형성하며 유사한 種이 모여서 屬을 이루고 또한 種의 상이에 따라 亞種, 變種, 品種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 제1조의 種의 개념은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필요한 기준이며, 실질적 관점에서 명확히 種의 개념을 생물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어서 協約 加入國들은 어떤 것이 種을 구성하는가의 문제와 논의는 科學者들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 견게서, p422).

#### 4. 氣候變化에 관한 유엔基本協約

氣候變化協約<sup>25)</sup>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CO<sub>2</sub>)등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억제시킴으로써 지구 표면 및 대기의 평균기온상승 등<sup>26)</sup>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系와 인간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氣候變化協約은 非加入國이나 이 協約上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특히 이 協約 제3조 5항은 各國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개방적 국가경제체제의 도모가 요구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유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규제, 부당한 차별, 위장된 무역제한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氣候變化協約은 에너지 사용규제 등 구속력있는 조치보다는 온실가스 배출 축소노력 등 장기적 방향제시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加入國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적지만, 加入國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에 관한 국가통계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 공표 및 의무를 준수할 것<sup>27)</sup>과 先進國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自國의 1990년 수준으로 억제토록 하고 開途國에 대해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행하도록 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간접적 규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附屬議定書 제정 협상이 진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규제 목표 및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등 協約上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며, 또한 주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炭素稅<sup>28)</sup>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25)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氣候變化協約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環境開發會議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4일에 가입하였다.

26) 지구온난화방지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추세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2030년에는 海面이 10-110Cm, 지구 평균기온이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전게서, p.7).

27) 先進國은 1994년 9월까지, 開途國은 1997년 3월까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氣候變化協約에 규정하고 있다.

28) 炭素稅(Carbon Tax)란 에너지가 포함하는 탄소 함유량 즉 에너지 사용으로 부터 발생될 이산화탄소의 량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物品稅로서, 炭素稅의 부과방식은 生産稅와 消

## 5. 리우宣言과 議題21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環境開發會議(UNCED)에서 사상 처음으로 各國 頂上간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기본규범에 합의하였는데,<sup>29)</sup>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基本原則인 「리우宣言」(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세부실천계획으로서 「議題21」(Agenda21)을 채택하였다.

「리우宣言」原則12에는 各國은 환경악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되고, 輸入國의 관할지역 밖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하며,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議題 21」의 제2장에는 초국가적, 지구적 환경문제를 규제하는 환경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무역간의 조화를 위한 多者間 貿易協商의 개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無差別原則과 最少規制原則 등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규제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방적 규제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IV. 先進國의 環境政策과 貿易規制

### 1. 美國

費稅로 구분되는데 生産稅는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모든 에너지에 대해 租稅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消費稅는 최종에너지 소비에 대해 租稅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외환경동향과 한국산업선택, 1995, p.46).

29) 리우유엔環境開發會議에서의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리우宣言」과 「議題21」의 채택 이외에, 持續開發委員會(CSD)의 설치, 氣候變化協約과 生物多樣性協約의 서명 그리고 山林聲明原則을 채택하였다.

美國政府는 美國의 환경기준이나 國際環境協約에 위반하여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무역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自國의 환경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自國産業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美國政府는 1994년 2월에 환경관련 일방적 제한조치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로서, ①美國이 會員國인 國際環境協約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他國의 행위가 야기하는 환경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美國管轄圈내에 있으며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를 지닌 경우, ③소재를 불문하고 어떤 生物種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는 멸종위험을 받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과학적 근거가 있는 국제환경 및 보존 기준의 효력이 감소되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sup>30)</sup>

위와같은 美國의 환경정책에 따라 무역규제조치를 허용 또는 강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海洋哺乳動物保護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1972)은 태평양동부 적도지역에서 참치잡이 조업을 하는 漁夫들로 하여금 참치잡이시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의 숫자를 줄이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美國의 기준<sup>31)</sup>을 초과하여 잡은 魚類나 그 가공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sup>32)</sup> 더욱이 수입제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국가로부터 참치를 수입한 第3國에 대하여도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둘째, 펠리修正法(The Pelly Amendment, 1988, 1990)<sup>33)</sup>은 국제어장보호계획 및 멸종위기에 처한 種의 국제적 보호계획의 실효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수산물, 수산제품 및 야생동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모

30) 이호생, 무역과 환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p.14.

31) 태평양 동부적도지역에서 참치조업을 한 외국선박들이 美國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자신들이 참치잡이 조업중 부수적으로 잡은 해양포유동물의 비율이 당해 년도에 태평양동부 적도지역에서 참치잡이 조업을 한 美國의 선박들이 부수적으로 잡은 돌고래의 비율의 1.25배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무부, 전게서 p.629).

32) 海洋哺乳動物保護法에 의거 美國政府는 1990년 8월 멕시코 등 中南美産 참치 및 참치제품에 대해 同法에 규정된 돌고래 致死基準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자, 멕시코는 1991년 2월 이를 GATT에 提訴 하였으며, 1991년 8월 GATT분쟁해결패널(Panel)은 美國의 수입금지조치가 GATT제3조 (內國民待遇의 原則)와 제20조(일반적 예외조항)에 위반된다는 判定을 내렸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전게서, pp.25-26).

33) 펠리修正法은 1967년 제정된 美國「漁民保護法」(Fishermen's Protective Act)을 1978년 펠리 上院議員의 제안으로 수정한 것이다.

든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sup>34)</sup> 규정하고 있다.

셋째, 滅種危機에 처한 種에 관한 法 修正法(The Endangered Species Act Amendments, 1988, 1990)은 美國에 새우 수출을 하는 국가는 새우잡이 작업 시 부수적으로 잡히는 바다거북의 숫자가 美國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여 새우를 잡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美國政府는 의무적으로 美國의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잡은 새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大氣淨化法(Clean Air Act, 1990)<sup>35)</sup>은 환경에 관한 포괄적인 법으로 산성비대책, 스모그 대책, 및 산업유해가스 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배출기준<sup>36)</sup>을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몬트리올議定書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의 점진적 생산중단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 美國議會는 환경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경기준 격차에 따른 생산비 차이만큼 相計關稅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國際汚染防止法の 立法<sup>37)</sup>을 추진하고 있다.

## 2. EU

유럽聯合(EU : European Union)執行委員會는 1973년 7월 EU域內國간 살충제

34) 펠리修正法에 의거 美國政府는 1994년 4월 臺灣의 호골 및 서각 불법교역행위와 관련 2천만불 상당의 臺灣産 야생동·식물 가공제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臺灣政府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동년 8월에 수입을 금지시켰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전게서, p.26).

35) 美國의 大氣淨化法은 1967년에 제정된 大氣法(Air Quality Act)을 1970년, 1977년에 각각 개정된 후 1990년 11월 15일 大氣淨化法으로 개정된 것으로, 제1장 대기정화기준과 유지 조항, 제2장 차량에 관한 조항, 제3장 유독오염물질, 제4장 산성비 억제대책, 제5장 허용, 제6장 성층권의 오존보호, 제7장 시행규정, 제8장 기타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전게서, p.940).

36) 美國의 大氣淨化法은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27.5MPG에서 40MPG로 상향조정하였고, 기준 미달시 0.1MPG당 5달러의 賦課金을 부과하며, 특히 연비가 27.5MPG 미만의 경우 1,000 - 7,700달러의 燃料過消費稅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7) 1991년 美國 브렌 上院議員이 제안한 國際公害防止法案에 의하면 美國政府는 外國企業에게 美國환경기준 준수에 필요한 비용만큼을 相計關稅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고든 上院議員이 제안한 大氣淨化法修正案과 地球水質淨化誘引法案도 美國의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방식으로 제조된 외국제품에 대해 일정율의 輸入稅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議會에 제안된 상기 3개 法案은 아직 입법화 되지 못한채 계류중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GR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4, p.131).

의 자유로운 유통 및 자연과 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殺蟲濟 市販에 관한 理事會 指針을 위한 提案」(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on the Market)을 마련하여 1996년 1월에 발효예정인데, 주요내용은 살충제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 리스트제정, 살충제 市販에 대한 各國의 허가제 유지, 會員國간 살충제 市販허가의 상호 인정제 제정 등이다.<sup>38)</sup>

EU執行委員會는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各國의 법규조화와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包裝材 및 包裝廢棄物에 대한 理事會 指針을 위한 提案」(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Packing and Pacakaging Waste)을 마련하여 1996년 발효예정인데, 주요내용은 指針 발효후 10년 이내에 포장폐기물의 90%(중량기준), 포장폐기물재료의 60%(중량기준)를 재생이용해야 하며, 各國은 이 指針에 따른 國內法の 실행 후 5년 이내에 포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포장재 회수 및 재생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것 등이다.<sup>39)</sup>

EU執行委員會는 1992년 6월 지구온실효과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제한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오염감축형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排出 및 에너지 消費構造에 대한 稅金 導入을 위한 理事會 提案」(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Introducing a Toy on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Energy)을 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은 炭素稅 및 에너지稅의 과세대상품목을 ①석유류로서 유연 혹은 무연휘발유, 디젤 및 가스오일, 키로젠 및 항공기용 연료, 증유, 석유코우크, 액화석유가스 등과 ②석유류이외의 에너지 제품으로 석탄, 갈탄, 이탄 및 부산물, 천연가스, 난방 및 자동차연료용 에틸 및 메틸 알콜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炭素稅 및 에너지稅의 부과대상행위는 과세대상품목의 추출, 제조 또는 수입이며, 납세의무자는 부과대상행위를 한 자로 정하고 있다.

EU는 2000년까지 석유 배럴당 10달러의 에너지稅의 부과(수입품에도 부과)를 권

38) 네덜란드의 「1962년 殺蟲濟法 제3조 a항에 따른 살충제의 환경적합기준에 관한 命令」은 토양의 내구력, 지하수에의 침투, 수질생태계에 미치는 위험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대한무역진흥공사, 전게서, p.156).

39) 獨逸은 1991년 「包裝廢棄物 抑制法」에서 생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운송용 포장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93년 「廢家電製品 處理法」에서 생산업자에 대한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는 1981년부터 음료용기회수제도를 실시하여 음료제조회사의 용기 회수장소 및 설비확보, 승인된 소재를 사용한 재활용 가능 용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경제기획원, 전게서, p.124).

장하고 있으나, 현재 英國을 비롯한 주요 會員國 및 EU產業界에서 炭素稅 및 에너지稅의 도입계획에 대하여 EU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sup>40)</sup>

### 3. 日本

日本政府는 가정용 서비스 및 수송분야에 있어서 에너지의 소비증대,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에어컨 및 가솔린 자동차 등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의 效率的 使用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199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 주요내용은 냉온방에어콘, 냉방에어콘 및 10인승 이하 가솔린 자동차에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표시되고 이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에어컨 및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산정방법은 關係 壽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日本政府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大氣汚染防止法」<sup>41)</sup>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동차의 배출가스 최대허용치에 관한 규정인 「수송차량의 안전 규정에 관한 修正案」이 마련되어 1993년까지 13차례의 개정을 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배출가스의 종류, 배출가스량 허용한도 등을 정하고 있으며,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가솔린 또는 LPG연료 사용시 일산화탄소와 배출허용한도를 2.7g/Km로 하고 있다.

日本政府는 환경보존조치의 일환으로 PET(Polyethylene Terephtalate)병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라벨링(labeling)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PET병에 담겨진 음료수, PET병에 담겨진 간장 및 음료수나 간장을 담기 위한 PET병을 제2

40) EU국가중 핀란드는 1990년 1월, 네덜란드는 1990년 2월, 스웨덴은 1991년 1월부터 炭素稅를 도입 부과하고 있다.

41) 日本의 大氣汚染防止法은 대기오염방지대책의 基本法으로 규제대상은 매연, 분진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이며, 규제방법은 매연에 있어서는 매연 발생시설의 배출구에 대해 배출기준을 정하고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있어서는 공장·사업장마다 총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분진에 있어서는 특정 분진발생시설의 규제기준 및 일반분진 발생시설의 구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에 있어서는 1대당 배출가스의 허용한도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環境廳長官 官房總務課, 最新環境 キーワード, 財團法人經濟調査會, 1992, p.128).

指定品目으로 指定하기 위한 政府令 및 再生資源活用促進法에 근거한 라벨링 (labeling) 기준을 設定하기 위한 閣僚令」을 제정하여 1993년 5월 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PET병에 담겨진 음료수, PET병에 담겨진 간장 및 음료수나 간장용 PET병의 製造業者나 輸入業者들은 PET병의 회수 및 재생을 위해 PET병에 라벨(label)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링(labeling) 기준은 再生資源活用促進法 제16조에 의거하여 閣僚令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sup>42)</sup>

## V. WTO體制下的 國際環境保存과 貿易規制

### 1. 概說

GATT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국제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었으나, UR협상에서 국제환경문제가 도외시 되었다는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감안하여 WTO協定 前文에 국제환경보존의 고려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sup>43)</sup>

한편 UR협상 종결을 위해 1994년 4월 15일 개최된 마라케시 GATT閣僚會議에서 [貿易과 環境에 관한 決定] (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을 채택하여 WTO내에 「貿易環境委員會(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WTO 貿易環境委員會는 1995년부터 약 2년간 10개 議題<sup>44)</sup>에 대한

42) PET병에 표시되는 기호는 "삼각형"과 "1"이라는 숫자 및 삼각형 아래부분에 표시되는 "PET"라는 문자로 이루어지며 또한 삼각형은 3개의 화살표(재활용표시)로 표시된다. 이러한 기호는 병에 주형 및 인쇄 혹은 라벨(label)로 부착되어야 하며, 수입된 병에는 주형이나 인쇄할 필요없이 라벨(label)만 부착해도 된다. 또한 기호의 위치는, 주형시에는 PET병의 밑부분이나 가까운 곳에 표시되어야 하며, 라벨(label) 부착시에는 병의 옆면에 부착되어야 한다(대한무역진흥공사, 전게서, pp.239~240).

43) WTO 設立協定에 "本 協定の 當事國들은 무역 및 경제활동분야에서의 그들의 관계가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보존과 보존수단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상응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허용하면서 ... "라고 규정하고 있다.

44) WTO貿易環境委員會가 검토할 議題는 ① 多者間 무역체제와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 (多者間 環境協約내의 무역제한조치 포함)간의 관계, ② 무역관련환경조치 및 중요한 무역효

검토작업을 하여, 1997년 개최예정인 WTO 1차 閣僚會議에 작업결과를 보고하고 同閣僚會議에서 貿易環境委員會의 작업결과를 기반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국제환경문제에 대해 GATT가 지극히 제한적, 소극적 입장을 취해 온 것과는 달리 새로운 WTO체제하에서는 국제환경논의가 WTO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UR協定가운데 특히 ①貿易에 관한 技術障壁協定, ②衛生 및 檢疫規制措置 적용에 관한 協定, ③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환경보존을 위한 무역규제조치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貿易에 관한 技術障壁協定

UR에서 타결된 「貿易에 관한 技術障壁協定」(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sup>45)</sup>은 수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그리고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또한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적합판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규정과 표준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국가들 사이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과를 갖는 환경조치와 多者間 무역체제간의 관계, ③ 多者間 무역체제와 다음조치간의 관계: a) 환경목적의 부과금 및 세금 b) 표준규격 및 기술규정, 포장과 라벨링(labeling) 및 재활용을 포함, 제품과 관련된 환경보존 목적의 요건, ④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및 중요한 무역효과를 갖는 환경조치와 요건의 명료성과 多者間 무역체제간의 관계, ⑤ 多者間 무역체제의 분쟁해결절차와 多者間 環境協約내 분쟁해결절차간의 관계, ⑥ 환경조치가 開發國(특히 最貧國)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무역제한, 왜곡조치의 제거에 따른 환경상의 이익, ⑦ 국내판매금지제품의 수출문제, ⑧ 서비스교역과 환경, ⑨ 知的財産權協定의 환경관련조항, ⑩ 민간단체와의 관계 및 문서배포관련 투명성 증진방안 등이다(대한무역진흥공사, 전계서, pp. 17 ~ 18).

45) 「貿易에 관한 技術障壁協定」은 원래 GATT 제7차 多者間 貿易協商인 東京라운드에서 채택되어 1980년 1월 1일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美國, EC, 日本 등 38개 국가가 정식 會員國으로 가입하고 있었다. 東京라운드의 技術障壁協定은 各國의 상이한 표준화의 관련제도와 절차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오히려 各國이 이를 더욱 효과적인 수입제한도구로 남용하여 1980년대에 와서 기술장벽과 관련된 국가간의 통상마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종전의 技術障壁協定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규정을 강화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 총점검: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 1993, pp. 98 ~ 100).

무역에 대한 위장된 규제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않된다(同協定 前文).

한편 기술규정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변화된 상황 또는 목적이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속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표준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同協定 제2조).

技術障壁協定이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그리고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GATT 제 20조 (b), (g)항의 일반적 예외조항과 유사하지만, 兩者의 차이점은 技術障壁協定에서는 기술규정, 표준등이 건강이나 환경보호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自國産業의 보호를 위해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술규정이나 표준화제도를 채택한 輸入國이 부담하지 않고 輸出國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技術障壁協定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의 정의에 제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관련 工程 및 生産方法도 포함시킴으로써<sup>46)</sup> 앞으로 「工程 및 生産方法」(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up>47)</sup>의 차이에 근거를 둔 무역규제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先進國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조치의 도입 및 합법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에 해로운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關稅를 부과하거나 PPMs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대해 關稅를 감면시켜 주는 綠色關稅制度 (Green Tariff Preference)가 논의되고 있다.

### 3. 衛生 및 檢疫規制措置 適用에 관한 協定

UR에서 타결된 「衛生 및 檢疫規制措置 適用에 관한 協定」(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은 인간, 동물, 식물의

46) 技術障壁協定에서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정의에 제품의 특성은 물론 工程 및 生産方法 (PPMs)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品質認證시스템制度 (예, ISO 9000 시리즈)를 技術障壁協定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47) PPMs란 원료의 취득에서 부터 완제품이 생산되어 출하될 때까지의 생산공정 및 방법 등 모든 생산행위를 지칭하며, PPMs규제는 이러한 생산의 어느단계에서든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국내외환경동향과 한국산업의 선택, p. 8).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sup>48)</sup>가 본 協定文에 합치되는 경우 동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同協定 제5조). 그러나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국가들사이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규제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않된다(同協定 前文).

한편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의 적정 보호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평가<sup>49)</sup>시에도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同協定 제 17조),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의 적정보호수준 판단시 會員國은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고(同協定 제 19조), 위생 및 검역규제를 수립 또는 유지할 경우에 會員國은 기술 및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 규제가 적정 보호수준이상으로 무역제한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同協定 제 21조).

또한 他會員國이 도입 유지하는 특정 위생 및 검역규제가 自國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 규제가 관련 國際機構의 기준, 지침 및 권고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기준, 지침 및 권고가 없을 경우에는 동 검역 및 검역규제에 대한 사유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규제를 유지하는 會員國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同協定 제23조).

48) 위생 및 검역조치에는 ① 해충, 병원, 병원매개체 및 병원원인체의 도입, 정착 및 전파로 생기는 위협으로부터 會員國의 영토내의 동물 및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 ② 식품, 음료 및 사료에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및 병원원인체로 인하여 생기는 위협으로부터 會員國의 영토내의 동물 및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 ③ 동물, 식물 및 동생산품에 의해 옮겨지는 병원 및 해충의 도입, 정착 및 전파로 인해 생기는 위협으로부터 會員國의 영토내의 동물 및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 ④ 해충의 도입, 정착 및 전파로 인한 會員國 영토내의 기타손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조치 등과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衛生 및 檢疫規制措置 適用에 관한 協定附屬書 A 제1항).

49) 위험평가란 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검역규제조치에 따라 輸入會員國의 영토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 물질 독소나 질병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衛生 및 檢疫規制措置 適用에 관한 協定附屬書A 제4항).

#### 4.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UR에서 타결된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일정한 요건아래 環境補助金の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데<sup>50)</sup>, 여기서 環境補助金은 政府가 企業들이 법률 또는 규정에 의거 부여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을 적용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① 비반복적이고 일회적 조치이어야 하며, ② 적용비율의 20%로 한정되어야 하고, ③ 企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지원대상투자의 운용 또는 대체비용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며, ④ 기업의 오염 및 폐해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에 비례하여야 하며, ⑤ 새로운 설비 또는 생산공정을 채택한 모든 企業이 이용가능해야 한다(同協定 제 8조).

또한 本 協定은 他會員國에 의하여 공여되는 허용되지 않는 環境補助金이 自國의 산업에 대한 被害, 무효화, 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會員國은 相計義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同協定 제 5 조).

한편 환경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美國 등 일부 先進國의 業界에서는 政府와 議會에 대하여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한 경쟁력상의 불이익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開途國의 느슨한 환경기준을 일종의 環境補助金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相計關稅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本 協定은 他會員國에서의 공기, 물 등 共有資源에 대한 규제받지 않는 이용을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므로<sup>51)</sup>, 會員國들이 앞으로 환경규제를 하지 않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相計關稅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50) UR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제1조 제1항 (보조금의 정의)에서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상계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등 3가지로 구분하고, 금지보조금으로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연구개발지원보조금, 지역개발지원보조금, 환경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51) UR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제1조 제1항은 보조금을 정의하면서 政府에 의한 재정적 지원, 소득 또는 가격지지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政府의 단순한 부작위를 보조금으로 볼 수는 없다.

## VI. 國際環境規制가 우리나라 貿易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 1. 우리나라 貿易에 미치는 影響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과 무역의 對外依存도가 높고 先進國에 비해 환경보호기준과 환경기술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환경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國際環境協約, 先進國의 환경정책 및 WTO協定상의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무역규제는 우리나라 무역과 산업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첫째, 「오존층 破壞物質에 관한 몬트리올議定書」에 의거 1992년 부터 CFC 사용량을 대폭 줄이면서 대체물질 개발에 뒤진 우리나라의 에어컨, 냉장고, 반도체, 발포제품 등 관련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開發國지위를 획득 향후 10년간 1인당 0.3kg미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sup>52)</sup>,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을 개발중에 있으므로<sup>53)</sup>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CFC보다 5~7배 비싼 수입대체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해져 원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어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有害廢棄物의 國境移動 및 處理에 관한 바젤協約」에 의거 유해폐기물의 국제거래는 오직 加入國간에만 허용되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지, 철강, 축전지, 프라스틱 加工業界의 원료난과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輸入國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내발생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외수출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 動·植物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에 의거 사향, 옹담, 코뿔소뿔 등 일부 한약원료의 수입이 제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製藥業界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sup>54)</sup>, 앞으로 山林原則聲明에 구속력을 부여하게 될 山林議定書가

52) 몬트리올議定書 제5조 제1항(開發途上國에 대한 特例)에서 議定書 발효일을 기준으로 CFC의 연간사용량이 1인당 0.3kg이하인 開發國은 동 한도를 유지하는 한 10년간 규제스케줄(schedule)을 유예하고 있다.

53) 우리나라는 KIST 주관하에 民官共同의 國策연구개발사업으로 1990년부터 CFC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진중인데, 개발기간은 1991년~1995년, 공장건설은 1993년~1996년으로 계획하고 있다(경제기획원, 전개서, p.61).

채택될 경우 열대산 원목 확보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氣候變化에 관한 유엔 基本協約」에 의거 加入國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이산화탄소(CO<sub>2</sub>)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억제하여야 하므로, 화석연료 의존도와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매우 높은<sup>55)</sup>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앞으로 에너지 사용규제가 강화되고 氣候變化協約 附屬議定書의 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 목표 및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등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美國政府는 1993년 10월 「氣候變化 防止를 위한 實踐計劃」을 발표하여 TV, 룸에어컨, 냉장고, 가스렌지 및 오븐, 형광램프, 중앙난방시스템, 난로 등 석유, 가스 및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전자제품과 전기모터, 모터동력장치 등 산업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을 1998년까지 대폭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아울러 「燃料 低消費 타이어 라벨(label)制度」를 도입하여 타이어의 성능검사를 통해 연료를 적게 소비하는 타이어를 선정하여 라벨(label)을 부착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美國政府의 환경정책은 우리상품의 對美 수출에 광범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EU 執行委員會는 1992년 6월 에너지 사용으로 부터 발생될 이산화탄소(CO<sub>2</sub>)의 량에 따라 부과되는 炭素稅의 도입을 결정하였는데, 炭素稅의 내용은 1993년에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 석유기준 배럴당 3달러를 부과하고 이후 매년 1달러씩 인상하여 2000년에는 10달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EU의 炭素稅는 域內에서도 英國의 반발로 시행이 유보되고 있으며, 개별국가 차원에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이미 에너지/炭素稅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현재 EU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 석유기준 배럴당 10

54) 世界野生動物基金(WWF)은 1992년 韓國, 中國, 臺灣, 예멘을 코뿔소뿔의 불법거래국가로 지정하고, 美國政府에 동국가들로 부터의 야생 동식물 관련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청원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한약원료의 수입은 1992년도에 사항 4,737,000\$, 응답 17,000\$, 천산갑 210,000\$, 거북이 501,000\$, 호랑이 63,000\$ 이었다 (경제기획원, 전게서, P.67).

55) 우리나라의 화석원료 의존도는 82.3%(1992년),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11.2%(1991년)로서, 화석원료 의존도는 中國 등 일부 開途國보다는 낮으나 美國 등 주요 先進國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경제기획원, 전게서, p.50).

달러의 炭素稅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원가가 3~39% 상승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sup>56)</sup>, 이러한 생산원가 상승율은 炭素稅 부과시 美國, EU, 日本 등 先進國들의 산업이 받게 될 추가부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우리상품의 對先進國 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57)</sup>.

한편 OECD국가가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稅를 도입할 경우 OECD 국가의 성장둔화에 따라 우리상품의 對OECD국가 수출수요가 감소되고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sup>58)</sup>.

일곱째, UR에서 타결된 「貿易에 관한 技術障壁協定」에는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정의에 제품의 특성은 물론 관련 工程 및 生産方法(PPMs)을 포함시켰으며, WTO貿易環境委員會를 중심으로 환경과 관련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PPMs 규제가 무역과 연계되면 우리상품의 對先進國 수출은 <표 1>과 같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先進國에 비해 전반적으로 환경기준이 낮고 환경관련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PPMs기준이 설정 강화되면 工程改善 및 설비대체에 막대한 환경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우리나라 수출산업가운데 특히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公害集約的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sup>59)</sup>. 또한 특정물질의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工程上 필요한 원료와 원자재의 조달이 어려워지는 반면, PPMs규제가 제품을 가공 처리해서 재수출하는 中繼國에도 적용될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중계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6) 炭素稅 부과시 우리나라 주요품목의 생산원가 상승율을 보면, 피혁제품·신발 3.0%, 전기·전자 3.1%, 자동차 및 부품 3.6%, 기계 3.8%, 섬유·의복 4.9%, 화학제품 11.0%, 제철 및 제강 21.1%, 석유제품 39.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 GR과 우리의 대응방안, P.138).

57) 대한상공회의소, GR과 우리의 대응방안, P.139.

58) OECD 국가가 석유 1배럴당 10달러의 에너지稅 부과시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실질수출 0.5%감소, 실질수입 0.5%감소, 수출가격 0.7%상승, 수입가격 2.5%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무역협회,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P.106).

59) PPMs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산업으로는 ① 生産工程에서 특정유해물질을 사용 또는 배출하는 도금, 피혁, 염색, 제지산업 ② 대기오염물질이나 기후변화물질을 다량배출하는 제철, 제강, 시멘트, 비료산업 ③ 폐수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을 다량함유하고 있는 금속, 기계, 화학제품, 섬유산업 ④ 제조후 유해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화학제품, 제지, 금속,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들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GR과 우리의 대응방안, P.24).

〈표 1〉 炭素稅 부과시 품목별 對先進國 수출감소효과(1992년 기준)

(단위 : 천달러, %)

품 목	미 국	일 본	EU	합 계
시 멘 트	0	3,714 (8.7)	0	3,174 (8.7)
유 리 제 품	3,340 (9.7)	1,545 (6.5)	965 (8.0)	5,850 (8.3)
종 이 제 품	3,119 (4.8)	748 (3.8)	559 (2.5)	4,426 (4.1)
화 학 제 품	27,182 (15.7)	58,908 (12.8)	48,937 (15.8)	135,028 (14.3)
고무·플라스틱제품	70,404 (19.4)	16,541 (14.8)	61,571 (21.3)	148,516 (19.4)
석 유 제 품	42,343 (35.2)	182,160 (29.8)	1,780 (40.7)	226,282 (30.7)
섬 유 · 의 복	295,953 (10.1)	146,728 (6.7)	171,618 (12.9)	613,699 (9.5)
피혁제품·신발	151,159 (9.5)	32,486 (6.8)	86,974 (10.6)	270,619 (9.4)
제철 및 철강	947 (20.8)	3,717 (12.2)	34 (29.0)	4,698 (13.4)
철강 1차제품	94,828 (14.6)	130,477 (10.2)	26,855 (17.4)	252,161 (12.1)
금 속 제 품	64,056 (12.5)	26,193 (9.3)	34,962 (11.5)	125,211 (11.4)
전 기 · 전 자	318,809 (6.8)	65,271 (4.4)	125,743 (5.2)	509,822 (5.9)
기 계	200,618 (8.6)	37,652 (6.1)	92,546 (6.8)	330,816 (7.7)
자동차 및 부품	50,974 (5.8)	1,639 (3.8)	29,747 (4.4)	82,360 (5.1)
기타 수송기계	12,776 (10.3)	2,567 (6.8)	10,758 (7.8)	26,101 (8.7)
합 계	1,336,508 (9.2)	710,345 (9.2)	692,450 (8.8)	2,739,302 (9.1)
15개품목총수출액	14,492,106	7,733,331	7,843,127	30,068,564

자료 : 유상희·최충규, 「기후변화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대책」, 산업연구원, 1994.

주 : ( )내는 감소율임

여덟째, UR에서 타결된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에 의하면 他國政府가 공여한 本協定上 허용되지 않는 環境補助金으로 인해 自國産業에 피해가 있는 경우 相計關稅

를 부과할 수 있는데, 先進國이 開途國으로 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環境相計關稅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對先進國 수출은 表2와 같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0)

(표 2) 環境相計關稅 부과시 품목별 對先進國 수출감소효과(1991년 기준)

(단위 : 천달러, %)

품 목	미 국	일 본	EU	합 계
화 학 제 품	13,538 (6.3)	43,024 (8.7)	18,734 (6.4)	75,286 (7.5)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18,212 (2.1)	10,221 (1.9)	10,314 (2.5)	38,747 (2.1)
시 멘 트	151 (13.3)	15,445 (13.0)	-	15,596 (13.0)
종 이 제 품	3,390 (8.3)	1,976 (10.7)	435 (8.1)	5,711 (9.0)
섬 유 류	78,452 (2.2)	46,655 (1.7)	43,396 (2.1)	171,503 (2.0)
신 발	26,278 (1.4)	4,859 (1.1)	10,389 (1.3)	41,526 (1.3)
철강·금속제품	100,549 (6.8)	285,797 (13.9)	26,447 (4.8)	412,793 (10.1)
전 기 · 전 자	61,623 (1.0)	25,432 (1.3)	27,343 (0.8)	114,398 (1.0)
자 동 차	14,186 (1.2)	79 (1.3)	3,692 (1.2)	17,957 (1.2)
기 타	48,165 (1.8)	54,989 (3.2)	27,109 (1.6)	127,563 (2.1)
계	364,534 (2.0)	488,477 (4.7)	168,069 (1.8)	1,021,080 (2.7)

자료 : 김준한 외,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3.

주 : ( )안의 수치는 감소율을 표시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환경규제는 우리나라의 무역과 산업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제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우리의 환경관련산업 및 환경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表3과 같이 환경기술과 그린상품의 무한한 新市場 개척을 기대해 볼수 있으며<sup>61)</sup>, 더욱이

60) 대한상공회의소, GR과 우리의 대응방안, p.137.

公害防止器機 및 기술의 무역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세계환경시장 예측

(단위 : 억불)

구 분	1990년	2000년	성장율(%)
환경오염처리기기	1,520	2,200	5.0
오수처리 및 폐수처리	600	830	4.0
폐기물 처리	400	630	6.4
매연 처리	300	420	4.4
기 타	220	320	5.1
서 비 스	480	800	7.4
계	2,000	3,000	5.5

자료 : The OECD Environment Industry, 1992

지역별 환경시장 예측

(단위 : 억불)

지 역 별	1990년	2000년	성장율(%)
북미 (미국, 캐나다)	840	1,250	5.4
구주 (독일 등 16개국)	540	780	4.9
아태지역(일본, 호주, 뉴질랜드)	260	420	6.2
OECD 소계	1,640	2,450	5.5
동구 및 러시아제국	150	210	4.0
기 타	210	340	6.8
비 OECD 소계	360	550	5.9
계	2,000	3,000	5.5

자료 : The OECD Environment Industry, 1992

## 2. 政府와 企業의 對應方案

### (1) 政府의 對應方案

첫째, 國際環境協約과 무역과 환경에 대한 국제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61) 경제기획원, 전계서, P.21.

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몬트리올議定書, 바젤協約,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 氣候變化協約 등 國際環境協約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政府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氣候變化協約과 같이 앞으로 附屬議定書 제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協約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논의 특히 WTO貿易環境委員會의 검토작업이 先進國에 유리한 방향이 되지 않도록 專門家를 참여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며, 그밖에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유엔貿易開發會議(UNTAD), 國際標準化機構(ISO), 유엔環境會議(UNEP) 등의 활동<sup>62)</sup>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환경 논의동향의 파악과 사전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國內環境關聯法令과 제도의 정비 및 국내환경기준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國際環境協約에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체결된 協約에 가입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國內環境關聯法令<sup>63)</sup>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환경기준을 국제적 비교분석을 통해 美國, EU, 日本 등 先進國수준으로 점차 높여 나가는 동시에<sup>64)</sup> 환경관련

62) ① OECD는 1991년 1월 貿易委員會와 環境委員會로 합동전문가 작업반을 설치하여 1단계 작업결과로 1993년 6월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절차적 指針」을 작성하였고, 그후 2단계로 무역환경정책 및 협정검토방법,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PPMs,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 사용, 환경보조금과 무역, 분쟁해결 등에 관한 指針 작성작업을 하고 있다. ② UNTAD는 무역과 환경간의 상호관계, 환경정책과 무역에 있어서 최근동향,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 환경규격의 국제적 협력관계 등에 관해 연구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③ ISO는 1991년 4월 國際商業會議所(ICC)의 건의를 받아 들여 제품 및 서비스공정에서 나아가 환경과 관련된 기업경영전반을 평가하여 환경인증을 부여하는 소위 ISO 14000 시리즈 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④ UNEP는 1994년 2월 先進國 및 開途國 총 27개국이 참여하는 環境長官會議를 개최하여 환경비용의 상품가격 반영문제, 환경기준의 국제적 조화문제, 환경세, 환경보조금 등에 관해 논의 하였으며, 무역과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전게서, P.28-33).

63) 현재 우리나라 環境關聯法令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오염피해분쟁법, 해양오염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등이 있다.

64)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大氣部門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3단계( 1994. 2. 31, 1995.1 - 1998.12. 31, 1999.1.1이후)로 나누어 강화하여 1999년 이후에는 美國, 日本의 수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1996.1.1부터 미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외 환경동향

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환경기술의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政府支援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65)</sup>. 또한 앞으로 국내외 환경시장 규모는 급격히 증대할 것이므로 국내시장의 확보는 물론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도 환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효율적인 公害防止制度를 수립하고 폐기물 再活用度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 炭素稅 등 公害防止費用을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경제적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현행의 직접규제방식 및 배출부과금제도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公害防止를 위한 企業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폐기물 교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재생용 원자재의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율과 처리기술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 절약형 및 環境親和的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소비형 업종들은 대체로 公害誘發度가 높고 특히 氣候變化協約의 규제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산업구조를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석유화학 등 자원 및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중심에서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산업구조를 보면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등 환경부하가 크고 에너지 다소비적인 업종의 비중 및 설비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sup>66)</sup> 環境親

과 한국산업의 선택, p.71)

65) 우리政府에서는 낙후된 국내환경기술을 조속히 선진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環境部, 通商産業部, 科學技術處, 建設交通部가 함께 참가하여 環境工學技術開發事業(G-7프로젝트)을 추진중에 있는데, G-7프로젝트는 2001년까지 총 2,315억원(公共1,715억원, 民間 600억원)을 투자하여 저오염·저공해 공정기술개발 등 21개 대형 국책과제를 연구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외환경동향과 한국산업의 선택, p 80).

66)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보면, 에너지 다소비·오염유발업종이 38.8%(1992년), 에너지저 소비·오염저유발업종이 61.2%(1992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비중은 에너지다소비·오염유발업종이 29.1%(1994년), 에너지저소비·오염저유발업종이 70.9%(1994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외 환경동향과 한국산업의 선택, p.72).

和的인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政府는 環境親和的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企業들이 추진하는 生産工程改善, 淸淨技術開發<sup>67)</sup> 등에 대하여 金融 및 稅制上的의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여 企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企業의 對應方案

첫째, 環境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環境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 企業은 環境문제를 단순히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원가부담 측면으로만 보아온 지금까지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環境을 고려한 관점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전향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企業은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폐기, 재활용 등 全 壽命週期課程에서 環境요소를 고려한 경영이념을 확립하고 기업조직과 관리방식을 環境親和的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sup>68)</sup> 이를 위하여 國際標準化機構(ISO)의 環境경영체제 및 관리기법규격을 참조하여 環境경영추진 매뉴얼(manual)을 산업별로 제정하고 先進國의 環境경영 세부기법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둘째, 環境親和的인 제품을 개발하고 環境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消費者의 형태는 상품가격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環境親和的인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sup>69)</sup>

따라서 우리 企業은 지구환경보호라는 공익적 측면과 消費者의 건강보호라는 개별 消費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킨 제품을 개발 생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企業은 環境투자를 원가부담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로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판매증가로의 연계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67) 淸淨技術(clean technology)은 既存工程을 개선하여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해 오염물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기술, 에너지·자원절약형 및 자원보존형 新工程, 원료채취·생산·유통·폐기에 걸친 상품의 全 壽命을 통하여 環境오염을 원천적으로 적게 유발시키는 環境상품의 개발 등을 말한다.

68) 우리 企業의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1994년 10월에 「環境경영방침 및 중기 環境관리목표」를 제정실시하고 있으며, 선경그룹은 그룹환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한화그룹은 1991년 3월 環境보존운동인 ECO(Environment Clean Operation)-2000 추진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외 環境동향과 우리산업의 선택, p.183, 211, 218).

69) OECD보고서에 의하면 先進國의 경우 상품가격이 다소 인상되어도 環境親和的인 상품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0-90%(1991년)에 달하며, 우리나라 消費者保護院의 조사에 의하면 69%가 環境親和的인 상품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위하여 종합적이고 치밀한 환경마케팅 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관련조직을 강화하고 生産工程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企業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정책과 환경규제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企業내의 환경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企業은 장기적으로 生産工程을 개선하여 환경오염발생의 예방에 주력해야 하며 앞으로 PPMs에 대한 규격제정이 보편화 될 전망인 점을 감안하여 제조업종별 汚染工程에 대한 PPMs규격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VII. 結 論

지난 47년간 세계무역을 관장해온 GATT는 국제환경문제를 다루기에는 여러가지 缺點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국제환경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제환경문제는 새로 출범한 WTO체제하에서 앞으로 전개될 환경과 무역에 관한 多者間 協商인 그린라운드(Green Round)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린라운드는 WTO체제하에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환경보존을 위한 무역규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GATT출범이후 지금까지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수행되어온 8차례의 多者間 貿易協商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매우 포괄적인 것이고 광범위한 것이 될 것이며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WTO체제하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貿易環境委員會에서 PPMs 규제의 수용범위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포장규제, 환경마크(mark)<sup>70)</sup>, 표준, 기술규정 등 환경정책수단으로 PPMs가 적용될 경우 국제무역규범과의 상충문제와 國際環境協約에 의해 PPMs규제가 합의될 경우 국제무역규범으로 수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70) 우리政府는 1992년 4월 환경마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환경마크를 취득한 業體는 先進國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獨逸, 日本, 캐나다 등의 경우 政府 조달시 환경마크 부착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國 수출상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환경마크 획득이 곤란한 실정이다.

한편 OECD貿易環境共同委員會에서도 PPMs규제에 대한 專門家會議을 수차례 개최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품특성을 기준으로 한 PPMs 구분 및 분석내용을 제시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념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國際標準化機構(ISO)는 1993년 環境經營標準化(ISO 14000시리즈)<sup>71)</sup>를 전담할 技術委員會<sup>72)</sup>를 설치하여 표준화를 위한 7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에 따라 1996-1998년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ISO4000시리즈<sup>73)</sup>는 製造業體 뿐만 아니라 病院, 百貨店 등 서비스업종까지 포함하는 모든 조직체의 종합적인 환경경영체제를 평가 감시하고 인증할 수 있는 국제환경보증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관리기법규격이라 할 수 있다. ISO의 환경검사규격 완료시점인 1995년 말부터는 무역거래에서도 점차 환경인증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1995년 3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氣候變化協約 제1차 加入國 總會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현재 氣候變化協約上的 先進國의 의무가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5년, 2010년, 2020년 등 특정시한까지의 추가 감축목표를 설정기로 했다. 한편 美國 등 先進國들은 2005년 이후에는 開途國도 이산화탄소 감축노력에 동참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이를 유도하기 위해 ①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한 국제적 효율기준을 설정하여 범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기반을 조성하고, ② 炭素稅를 도입하여 저탄소 함유 에너지로의 연료대체를 촉진하며, ③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쿼타(Quota)제를 도입하여 전세계 배출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3단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美國 등 일부 先進國의 環境保護論者, 環境法律專門家 등은 국가간 환경기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환경덤핑 또는 生態的 덤핑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環境相計關稅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環境相計關稅는 가장 강력한 무역

71) 환경표준화의 대상은 ①환경경영체제, ②환경감사, ③환경라벨링(labeling), ④환경성능평가, ⑤라이프사이클(life cycle)분석, ⑥제품표준의 환경적 고려 요소 등이다 (경제기획원, 전게서, p.118).

72) 현재 國際標準化機構 技術委員會(ISO/TC207)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4개국이 正會員으로 가입하고 있다

73) ISO 4000시리즈의 주요내용은 ①조직체의 체계적인 환경관리 활동 및 이를 제3자가 감시하는 방법과 상품자체의 환경성을 인증하는 규격, ②조직체와 상품의 환경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 및 평가기법에 대한 규격, ③용어 및 정의에 대한 기본규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의 환경동향과 한국산업선택, pp.29-30).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부과 대상, 기준 및 방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環境相計關稅의 부과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환경과 무역에 관한 多者間 協商에서 중심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제환경규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강화될 것은 自明한 것인바 국제환경규제의 수단으로 무역규제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輸出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가 확산될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효과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되고, 증가하는 환경비용으로 인해 제품원가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환경규제조치의 무역장벽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제품의 先進國市場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 측면에서 보면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이 일반적인 무역규제나 국제경쟁력 약화와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환경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나라 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도 자발적인 환경배려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낙후되어 있는 우리의 환경산업 및 淸淨生産技術을 적극 개발 육성하여야 하고 우리의 산업구조가 環境親和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政府 주도의 환경규제에만 의존한 환경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企業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企業에 대한 적절한 誘引制度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WTO체제하에서도 政府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環境補助金으로 지급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환경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각 企業별 대응은 환경 문제가 안고 있는 종합성, 공공성 및 전문 기술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政府와 企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고 産·學·研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國內文獻〉

- 권혁수, 박정순, 최근 유럽의 에너지/환경정책 동향, 에너지경제연구원, 1992. 4.
- 이희성, 기후변화협약과 한국경제, 에너지경제연구원, 1994.
- 한택환, 미국의 환경-무역정책: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94-17, 1994.
- 곽일천, 그린 라운드의 대두와 한국환경정책의 과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2.
- 김준환 외, 그린 라운드와 한국경제, 웅진출판사, 1994. 5.
- 유상희, 최충규, 기후변화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책, 산업연구원, 1994.10.
- 장태구, 환경산업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0.
- 서인섭, 강선구,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럭키금성경제연구소, 1994. 10.
- 이호생, 무역과 환경 : GATT / WTO의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총점검 :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 1993. 12.
- 산업연구원, 국제환경규제가 우리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1994. 5.
-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경문제와 기업, 1992. 2.
- , 그린라운드 동향과 주요업종의 대응방안, 1994. 12.
- 대한상공회의소, GR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4. 12.
- , 국내외 환경동향과 한국산업의 선택, 1995. 5.
- 대한무역진흥공사, 국제환경협약과 우리의 무역환경, 1992. 2.
- , EC환경기준, 1992. 9.
- , UR최종협정문, 1994. 1.
- , 선진국의 무역장벽(II), 1994. 9
- , 미국의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 1995. 6.
- 한국무역협회, 국제환경규제가 우리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992. 12.
- ,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993. 2.
- , 환경관계법령집, 1994. 9.
- 경제기획원, 지구환경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1994. 1.
- 외무부, 주요국제환경협약집(I), 1994. 4.

- 법 무 부, UR협정의 법적고찰(上)(下), 1994. 5.  
 ———, 국제환경법과 무역, 1995. 5.  
 환 경 부, '95 제2차 WTO/CTE 무역·환경회의자료, 1995. 4.  
 상공자원부,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따른 무역정책방향, 1992. 8.  
 ———, ISO1400전망과 산업대책, 1994. 9.  
 통산산업부, WTO, OECD의 무역 -환경논의 동향, 1995. 1.

〈歐美文獻〉

- John H.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Michie Company Law Publishers, 1969.  
 William R. Cline, *The Economics of Global Warmi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Jan - Olaf Willums - Ulrich Golücke, *From Ideas to Action-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992.  
 McDonald, Janet, "Trade and the Environment : Greening the GATT : Harmonizing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New World Order", *Environmental Law* Vol.23, 1992.  
 Subramanian, A.,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 A Nearly Empty Box?", *World Economy* Vol.15, 1992.  
 Esty, Daniel C., *Greening the GATT :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T. H. Tietenberg, *Economics and Environment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1994.  
 Cameron, J., P. Demaret, D. Geradin, *Trade & the Environment : The Search for Balance*, Cameron May Ltd., 1994.  
 Guruswamy, Palmer, Wes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World Order*, West Publishing Co., 1994.  
 U.S. Department of Energy,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Waste Management Five-Year Plan*, 199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nergy - Consequences of the Proposed Carbon / Energy Tax*, 1993.  
 World Bank,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1992.

- GATT, *International Trade Report 1990-91, Trade and Environment*, 1992.
- , *Trade Provisions Contained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1992.
- ,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Taken Pursuant to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1994.
- OECD, *Joint Report on Trade and Environment*, 1992.
- , *Typology of Trade Measures Based on Environmental Product Standards and PPM Standards*, 1993.
- , *Trade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Taxes*, 1994.
- Marrakesh UR Ministerial Meeting, *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1994.

〈日本文獻〉

- 英エコノミスト・ 山口光恒, 地球環境時代の家業經營, 有斐閣, 1991.
- 寺西俊一, 地球環境問題の 政治經濟學, 東洋經濟新聞社, 1992.
- 藤崎成昭, 地球環境問題 と 發展途上國, アジア經濟研究所, 1993.
- 宮本憲一・楠田貢典・佐佐木進 監譯(Ernst Ulrich von Weizsäcker 著), 地球環境政策, 有斐閣, 1994.
- 環境廳長官官房總務課, 最新環境キ-ワ-ド, 財團法人經濟調查會, 1992.
- 通商産業省, 産業環境 ビジョン, 1994.